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 2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 전 지 방 법 원 공 주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신기용(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2. 15. 21:47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친구 추천이 된 피해자 D(17세, 여)의 사진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같이 있고 싶은데 만나자", "밤에 행복하게 해줄께", "니가 달라는 돈 줄께", "너가 맛나게 생겼는데? 딴놈만 대주지 말고 나에게도 대줘라", "나랑은 진짜 안할꺼야" 라는 등의 글을 수차례 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13. 16:30경 충남 청양군 E빌딩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훔쳐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입구를 통해 용변 칸 안에까지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페이스북 메시지 송수신 내용 촬영 사진
-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1. 수사보고(범죄 재현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징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 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 간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도중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